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3323
----------	------

제출연월일 : 2026. 8. .
제출자 : 하 남 시 장

1. 위탁사무명 :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2. 사무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추진 필요성

-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2021.12.21.)」의 10년 협약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 「하남 경기공공벤처센터 운영」 및 「하남시벤처센터 시설운영」 위·수탁 협약이 2026.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및 경기 동부권 창업 혁신공간의 안정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재계약 추진 필요

3. 위탁사무 내용

○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 하남시벤처센터 관리·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
- 입주기업 모집·선발 및 각종 지원
- 기타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의 효율적 운영 등

4.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하남시벤처센터(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소 재 지	하남시 검단산로 239(창우동)
규 모	연면적 8,785㎡(지상 7층, 지하 2층) 및 부설주차장(98면)
주요시설	창업보육공간 80개실, 교육장, 시제품제작소, 운영사무실 등
위탁범위	시설 유지관리·운영 및 입주기업 모집·선발·지원 사업

5. 사무위탁기간 :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 2027. 1. 1. ~ 2031. 12. 31. (5년)

6. 수탁자 선정방식

○ 기존 수탁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김현곤)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추진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액	산출근거
계	1,047,000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180,000	○ 센터운영 180,000천원 - 기업지원비 168,000천원 - 사업운영비 11,765천원 - 위탁수수료 235천원
하남시벤처센터 시설(건물) 관리	867,000	○ 시설관리 867,000천원 - 관리용역비 559,700천원 - 시설운영·유지관리비 290,300천원 - 위탁수수료 17,000천원

※ 2027년 이후 예산은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확정

8. 사무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창업기업 육성·지원의 전문성 확보 및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사무위탁 방식 적정
- 기업지원 분야의 전문성, 기존 운영 경험 및 입주기업 지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정함

9. 성과평가 결과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21조 및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종합심사 결과 → 평균점수: 93.95점(100점 만점)
 - 수탁기관 제출자료 검토 및 벤처센터 시설물 관리·운영 실태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성과평가표에 따른 항목별 평가 및 점수 산정
-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는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됨

10.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6. 10월 중
- 재계약체결 : 2026. 11월 중

11. 관련 법령 및 조례 : 붙임 1

관련 법령 및 조례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등)

-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의2(선정방법 등)

- ① 시장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전문성,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입이 어려운 경우
 2. 위탁사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위탁기관의 모집대상을 제한하려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위탁기관 선정 공고시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4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과 제5항,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5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 관련시설을 지방공기업이나 재단법인, 대학 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